

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□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(5.18~6.7)

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05.18~06.07
방구석에서 취준부터 취보까지!

Stage 1.
라이브 채용 설명회 시청

Stage 2.
지원 서류 제출

Stage 3.
면접 영상 제출

취업성공!

방구석에서 참가하기

- 언제 2020.05.18 ~ 06.07
- 어디서 우리 집 방구석
- 무엇을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(www.fome-job.com) 참여
- 어떻게 홈페이지 접속 > 라이브설명회 시청 05.18 > 서류접수 05.18 ~ 05.27 > 면접영상접수 05.29 ~ 06.07

산업통상자원부 |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| IBK기업은행

일시	2020.05.18~2020.06.07		
장소	온라인홈페이지 (www.fome-job.com)		
참가대상	모든 구직자		
행사구성	사전채용설명회, 라이브채용설명회, 채용관, 채용상담관		
주최	산업통상자원부		
주관	한국중견기업연합회, IBK기업은행		
기업신청기간	개인신청기간	2020.05.18~2020.06.17	
문의처	02-6365-7008	FAX	02-393-8210
담당자	박람회운영사무국	E-MAIL	career@keddisco.com
사이트(출처)	http://www.fome-job.com		

자료출처: <http://www.fome-job.com>

-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
 - 현행 휴업·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
-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

<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>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‘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’*의 후속 조치로,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%로 상향하는 내용의 「고용보협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*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(2020.3.25. 수)에서 발표

□ 이에 따라,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‘20.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%로 한시적으로 확대되고,

○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(66,000원)은 동일하다.

< 일반 업종의 휴업·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>

고용유지조치 기간	2020.1.1.~1.31.	2.1.~3.31.	4.1.~6.30.	7.1.~7.31.
우선지원대상기업	67%(2/3)	75%(3/4)	90%(9/10)	75%(3/4)
대규모기업	50%(1/2)	67%(2/3)	67%(2/3)	67%(2/3)

<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>

□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,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,

- 휴업·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,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*하고 있다.

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

- 다만,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.

□ “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”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,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.

- 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 '20.9.30.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*을 통해 인정하고,

* 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는 “사업주 확인서”로 신규채용 불가피성 인정

- 10%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.

□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“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”면서

- “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< 예시: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>

- ✓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(업무 특수성)
- ✓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(법령 기준 충족)
- ✓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(E-9)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(채용시기 변경)
- ✓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(파견근로자 직접 고용)
- ✓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(지역적 거리)
- ✓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,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(사업 확장)
- ✓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(기존인력 재배치)
- ✓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(직무의 차이)

- 참고 1.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관련 지원 예시
2.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관련 FAQ
 3.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
 4. 고용유지지원금 개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(☎044-202-7223), 백경남 사무관(☎044-202-72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관련 지원 예시

□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'20.4.1.부터 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유급휴업·휴직 수당의 90%를 지급합니다.

○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(4.1.~6.30.)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<p>※ 사례1</p> <p>○ 고용유지조치를 '20.3.1.~'20.6.30.까지 실시한 경우</p> <p>⇒ '20.3.1.~'20.3.31.(1개월) : 3/4</p> <p>⇒ '20.4.1.~'20.6.30.(3개월) : 9/10</p>	<p>※ 사례2</p> <p>○ 고용유지조치를 '20.6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경우</p> <p>⇒ '20.6.1.~'20.6.30.(1개월) : 9/10</p> <p>⇒ '20.7.1.~'20.7.31.(1개월) : 3/4</p>
--	--

<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>

* (가정) 월급 200만원 근로자, 휴업수당 140만원 : 지원금 추가 상향 지원

구 분	고용유지조치 기간 / 지원 금액(실제 지급은 +1개월)			
	'20.3월	'20.4월	'20.5월	'20.6월
(사례 1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20.3.1.~'20.6.30.	105만원	126만원	126만원	126만원
(사례 2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20.6.1.~'20.7.31.	'20.6월	'20.7월		
	126만원	105만원		

< 참고: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>

- 산업*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
 - * 산업의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 - ▶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: 제조업
 - ▶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: 광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영상업, 사회지원서비스업, 과학기술서비스업, 보건업
 - ▶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: 도소매업, 숙박음식업, 금융보험업, 예술스포츠업
 - ▶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: 그 밖의 업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.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

<1>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이 적용되나요?

-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'20.4.27.부터 9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됩니다.
- 4.27.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4.27.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됩니다.

<2>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?

- 아닙니다.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며, 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 '20.9.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에 한하여 “사업주 확인서”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규채용을 허용합니다.
- 다만, 10%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
<3>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신규채용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“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”<참고 3>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4>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?

- 사업주확인서에 허위 기재하는 경우, 지급 제한(1년)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참고 4

고용유지지원금 개요

- ▶ (사업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
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
- ▶ (특별지원)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, 지원금액 상향 적용

* 「국가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- (지원요건) 전체 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,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-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(1.29.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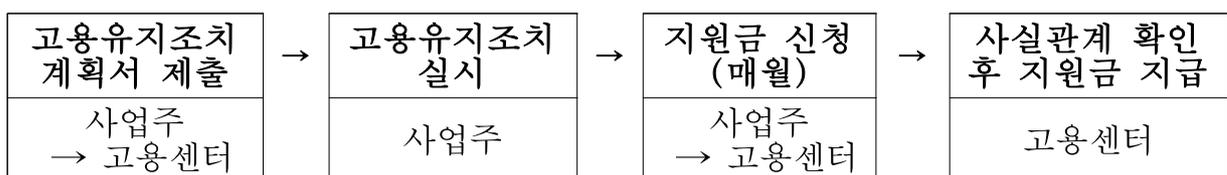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- (지원금액)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*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
* 2.1.~7.31. 기간 동안의 휴업·휴직: <우선지원대상기업> 2/3→3/4, <대기업> 1/2→2/3

*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(3.16.~9.15.) 동안의 휴업·휴직: <우선지원대상기업> 3/4 → 9/10, <대기업> 2/3 → 2/3~3/4

- 지원(신청)절차



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(E-9) 입국 관리 강화

-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 절차 마련
- 구직활동 기간 연장, 격리시설 이용비용 대여 등 근로자 지원

□ 고용노동부(이재갑 장관)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(E-9)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(E-9)는 입국 전에 현지 EPS(Employment Permit System)센터*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.

* 태국, 베트남 등 송출국(16개국)에 旣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

*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

○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,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,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.

* 확인서 발급신청(현지 EPS센터) → 근로자 명단 통보(EPS센터→한국산업인력공단) → 거소 확인(한국산업인력공단) → 발급(EPS센터)

-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,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②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,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.

○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.

③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**외국인 근로자(E-9)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.**

-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(중기중앙회 연수원 등)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격리시설 이용도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**전용 격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.**

④ 외국인 근로자(E-9)가 자치단체·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**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**는 점을 고려하여

- 휴면보험금* 이자수익을 이용하여 **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줄 예정이다.**

*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,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(3년)가 완성된 보험금

⑤ 아울러, **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(체류기간 범위 내)하고,**

- 재고용허가자* 중 **국외에서 체류기간(3년)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.**(법무부 협조)

* 3년 근무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무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은 “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**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,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**”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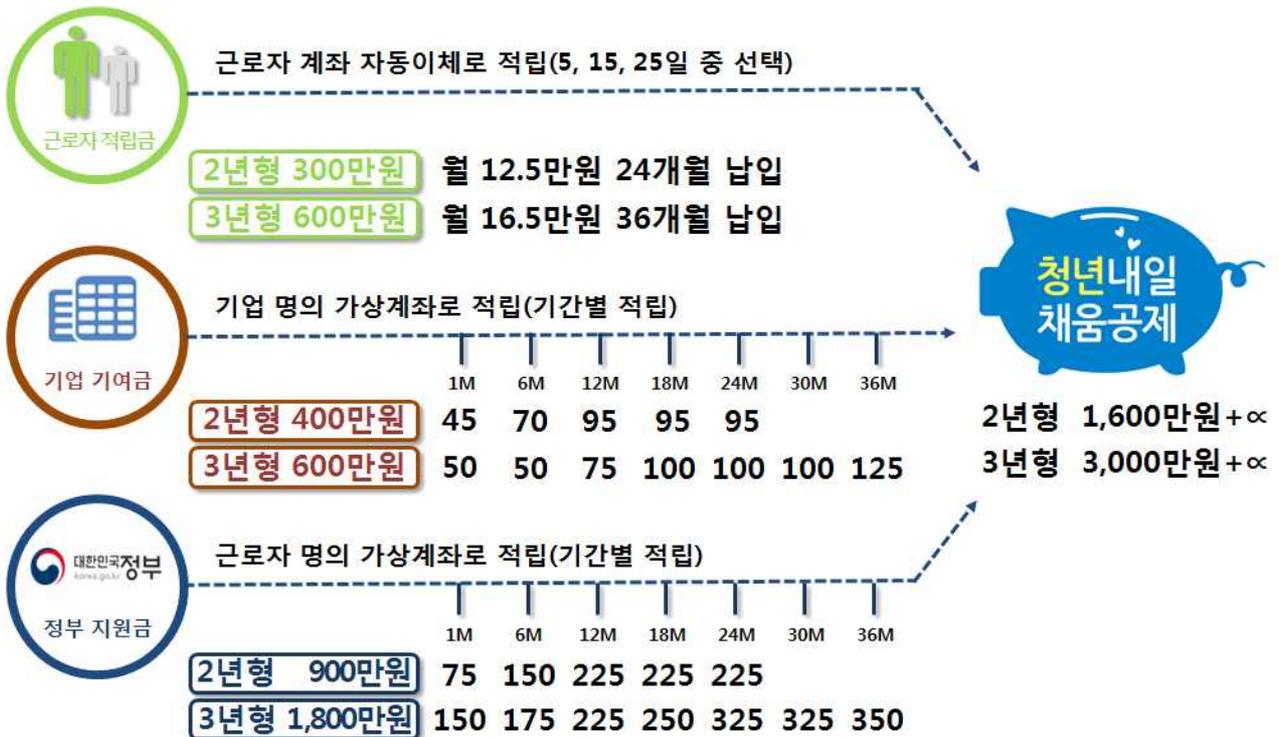
- “**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**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최난주 사무관(☎044-202-714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 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- 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“)
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

운영기관명(대표전화)	운영기관명(대표전화)
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
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

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1	고용창출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
2	고용안정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
3	고용유지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유지지원금, 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
4	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

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양 장려금	중복 시	지원 비율
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	고용창출장려금	+ 70% 추가지원
	고용안정장려금	+ 100% 추가지원

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고용장려금 지원사업		지원내용
고 창 장려 금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	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	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청년추가 고용장려금	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
	국내 복귀 기업 지원	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
	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	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
	고용촉진 장려금 지원	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고 안 장려 금	정규직 전환지원	·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증가 보전금: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30만원
	위라벨일자리 장려금	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
	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	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
	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	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
고 유 지 원 금	고용유지 지원금	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장 년 · 고 령 자 고 용 지 원 금	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	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지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
	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	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